

특 허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22허5102 등록무효(디)

원 고 주식회사 A

대표자 사내이사 B

소송대리인 유미특허법인, 담당변리사 김은진, 박성인

피 고 C(C)

미합중국

대표이사 D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태연, 정현령

변 론 종 결 2023. 4. 11.

판 결 선 고 2023. 5. 11.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22. 8. 8. 2021당3663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디자인(갑 제1, 2호증)

1) 물품의 명칭: 신발

2)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우선권주장일: 디자인등록 제684535호/ 2012. 9. 10./ 2013. 3. 6./ 2012. 3. 9.

3)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1]과 같다.

4) 위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출원은 미국에서 2013. 10. 15. 디자인특허로 등록되었고(등록번호: D691,351 S), 그 도면 등은 [별지 1-1]과 같다.¹⁾

나. 선행디자인들²⁾

1) 선행디자인 1(갑 제4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이의에 의한 취소확정일: 디자인등록 제574279호/ 2010. 3. 30./ 2010. 9. 27./ 2010. 10. 1./ 2011. 8. 8.

나) 물품의 명칭: 슬리퍼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2]의 가.와 같다.

라) 취소 전 권리자: 박말숙

1) 피고는 이 법원의 제1, 2회 변론기일에 걸친 거듭된 요청을 받고 위 디자인특허의 등록원부를 2023. 4. 20. 참고 자료 제3호로 제출하였다.

2) 원고가 특정한 디자인적 요소가 그 디자인이 속한 분야에서 공지형태임을 증명하기 위해 갑 제18 내지 26호증으로 제출한 선행디자인 6 내지 14는 뒤의 관련 부분에서 필요한 범위에서만 본다.

2) 선행디자인 2(갑 제5호증)

가) 등록번호/ 출원일/ 등록일/ 등록공고일/ 이의에 의한 취소확정일: 디자인등록 제574280호/ 2010. 3. 2./ 2010. 9. 27./ 2010. 10. 1./ 2011. 8. 8.

나) 물품의 명칭: 슬리퍼

다) 디자인의 설명 및 도면 등: [별지 2]의 나.와 같다.

라) 취소 전 권리자: 박말숙

3) 선행디자인 3(갑 제6호증)

선행디자인 3은 미국에서 2011. 9. 20. 디자인특허 등록된 '장식적 윗가죽을 갖는 클로그(Clog with Decorative Foxing)'에 관한 디자인으로(등록번호: D645,235 S), 그 도면은 [별지 2]의 다.와 같다.

4) 선행디자인 4(갑 제7, 27호증)

선행디자인 4는 미국에서 2010. 3. 2. 디자인특허 등록된 '신발(Footwear)'에 관한 디자인으로(등록번호: D610,784 S), 피고가 위 등록 전, 출원에 관한 권리를 전전양수 하여 현재도 디자인특허권을 보유하고 있고, 그 도면 등은 [별지 2]의 라.와 같다.

5) 선행디자인 5(갑 제8호증)

선행디자인 5는 미국에서 1978. 1. 31. 디자인특허 등록된 '신발(Shoe)'에 관한 디자인으로(등록번호: Des. 247,073), 그 도면은 [별지 2]의 마.와 같다. 선행디자인 5의 존속기간은 1992. 1. 31. 만료되었다.

다. 이 사건 심결의 경위 등

1) 원고는 2021. 8. 8. 피고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동일·유사하거나 그 디자인이 속하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디자이너'라 한다)이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2013. 5. 28. 법률 제1184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2021당3663).

2) 특허심판원은 2022. 8. 8.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유사하지 않고,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내지 3에 나타난 장식밴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3) 한편 피고는 2021. 9. 14. '원고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 관한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합567469호로 원고를 상대로 그 제품의 사용금지 및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22. 8. 12.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들을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그에 기초한 청구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에 피고가 항소하여 특허법원 2022나1814호로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1 내지 4와 동일·유사하거나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5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을 결합해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위반된다.

나. 피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에서 비슷한 유형의 신발에 이미 나타나 있는 형태나 신발의 기능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 즉 ① 신발 뒷부분이 개방된 점, ② 발뒤꿈치에 걸 수 있는 회전형 고리부, ③ 발등 갑피(甲皮)에 있는 다수의 원형 통기구멍은 유사 판단에서 중요도를 낮게 보아야 한다. 신발은 예로부터 다양한 디자인이 창작된 분야여서 유사의 폭이 좁다는 점까지 고려하여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나머지 부분을 선행디자인들과 비교하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규성과 창작성이 있다.

3. 이 사건 심결의 위법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이하 '공지디자인'이라 한다)의 결합에 의하거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해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는, 공지디자인의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공지형태'라 한다)이나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모양·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이하 '주지형태'라 한다)을 거의 그대로 모방 또는 전용하였거나, 이를 부분적으로 변형하였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는 상업적·기능적 변형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 디자인 분야에서 흔한 창작수법이나 표현방법으로 변경·조합하거나 전용하였음에 불과한 디자인 등과 같이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이어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데 있다.

또한 공지형태나 주지형태를 서로 결합하거나 그 결합된 형태를 위와 같이 변형·

변경 또는 전용한 경우에도 창작수준이 낮은 디자인에 해당할 수 있는데, 그 창작수준을 판단할 때는 공지디자인의 대상 물품이나 주지형태의 알려진 분야, 공지디자인이나 주지형태의 외관적 특징들의 관련성, 해당 디자인 분야의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통상의 디자이너가 쉽게 그러한 결합에 이를 수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후261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들의 대상물품 비교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대상이 되는 물품이 '신발'이고, 선행디자인들은 '슬리퍼', '클로그',³⁾ '신발'로서 대상물품이 모두 동일하거나 유사하다.

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도면 대비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의 구체적인 형상과 모양이 잘 나타나는 도면을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문자 부분과 균청색으로 표현한 부분, 선행디자인 4에서 점선("broken lines")으로 표현한 부분은 각 권리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다. 대비 편의를 위해 선행디자인 4의 일부 도면은 좌우반전 또는 회전하였다.

도면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4
사시도		 (좌우반전)

3) 클로그(clog)는 원래 '막다, 나막신'을 뜻하는바, 이 사건에 원고는 '발가락 부분이 막힌 슬리퍼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였고(원고 2022. 10. 21. 준비서면 2면), '밑창(sole)이 두꺼운 신발(또는 슬리퍼)'이라는 의미도 함께 담고 있다고 보인다.

평면도		 (반시계방향 90도 회전)
우측면도		
좌측면도		
정면도		
배면도		

라. 공통점과 차이점 분석



1) 공통점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4는 ① 전체적인 형상에 있어서 신발 뒷부분을 개방하고 신발 앞쪽에 발등과 발가락을 일체로 감싸는 덮개를 두었으며, 4) 발뒤꿈치에


걸 수 있는 밴드형 고리를 발등 덮개부의 좌우 측면에 결합해 앞뒤로 회전할 수 있게 한 점, ② 발등 덮개부에 13개의 원형 통기 구멍을 동일한 배치로 형성한 점, ③ 신발 중창(midsole)⁵⁾에 그 중창 높이의 1/5 정도 두께로 줄무늬를 두른 점, ④ 밴드형 고리의 폭 정가운데에 블록하게 튀어나온 줄무늬가 있는 점 등에서 공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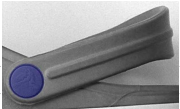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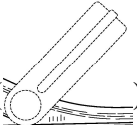
2) 차이점

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 중창의 앞부분에서 측면 1/3 정도 지점까지 장식


밴드가 있는 반면() , 선행디자인 4에는 그러한 장식밴드가 없는 점() ,

②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신발 중창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중창 높이의 위에서부터 1/5~2/5 정도 지점에 배치된 반면() , 선행디자인 4에서는

중창 가운데에 배치된 점() ,⁶⁾ ③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밴드형 고리 폭이 발뒤꿈치에 걸리는 중앙부에서 나머지 부분보다 다소 넓게 형성된

반면() , 선행디자인 4에서는 폭이 일정한 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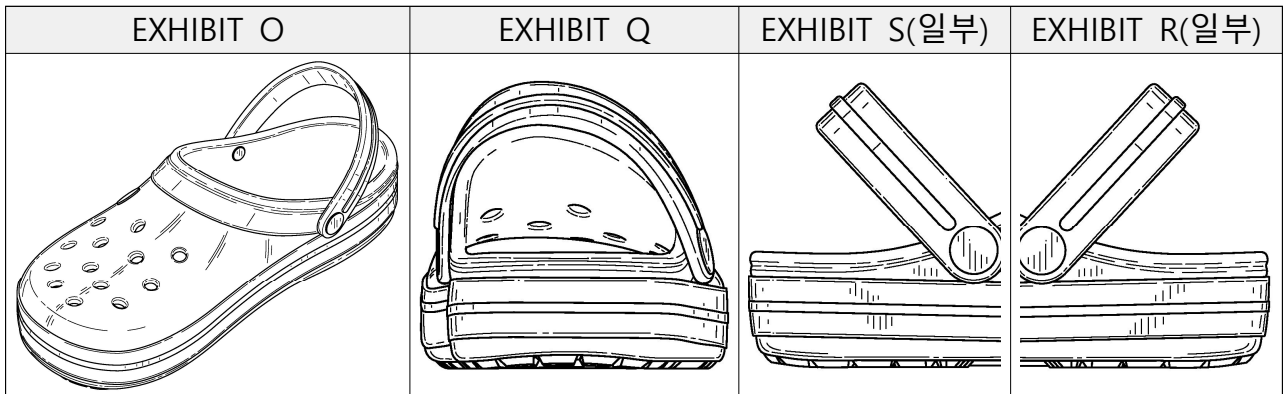
3) 피고가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는 나머지 부분에 관한 판단

피고는, '선행디자인 4의 중창 뒤축에 점선으로 표시된 직사각형 부분() 은 로고 패치를 부착하는 등 여러 디자인적 요소가 결합될 수 있고, 그러한 직사각형

4) 일반적 신발의 '선포(vamp, throat)와, 앞 보강을 위한 '선심' 혹은 '코 싸개'(toe cap, toe box) 부분에 해당한다.
 5) 신발 밑창 중에서, 지면에 직접 닿는 겉창(outsole)과 신발 안에서 발바닥에 닿는 안창(insole) 사이에 삽입되어 걸거나 뒹 때 충격을 흡수·분산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
 6) 이 사건 심결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에서 위 줄무늬 아래와 밴드형 고리 위아래에 있는 영문자 'C' 부분(앞의 대비표 중 '우측면도' 참조)도 선행디자인 4와 차이 나는 부분이라고 보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문자 부분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서 제외된다.

없이 중창 뒤축 전체에 줄무늬를 두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행디자인 4의 직사각형 부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선행디자인 4의 권리 범위에서 제외되는 부분이고([별지 2]의 라. '디자인의 설명(Description)' 부분 참조), 이를 제외한다면 중창의 뒤축 전체에 줄무늬를 두른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다를 바가 없다. 더욱이 갑 제27호증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선행디자인 4의 출원인[이탈리아인 E(E)]은 선행디자인 4를 출원할 당시(출원일: 2009. 8. 21., 우선권주장일: 2009. 2. 22.) 직사각형 부분이 제외된 [별지 2]의 라-1.와 같은 실시례를 함께 제출했고(다음 표 EXHIBIT O, S, R, Q 참조), 이는 선행디자인 4가 2010. 3. 2. 등록됨에 따라 공개되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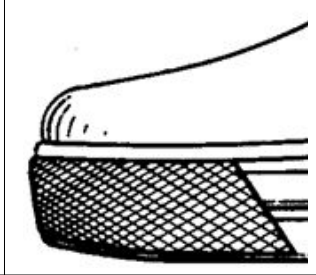


마. 차이점 검토


1) 차이점 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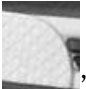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8 내지 21, 24, 25, 26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❶ 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5의 구성 중 장식밴드 부분과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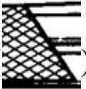
가) 선행디자인 1, 2, 5에는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장식밴드가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5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선행디자인 1, 2, 3의 장식밴드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장식밴드 끝부분을 모서리만 완만하게 둥근 사선으로

절단한 반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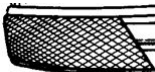
, 선행디자인 1, 2는 장식밴드 끝부분이 전체적으로 곡선 또는 호(弧)를 이루게 절단하였고( , )

, 선행디자인 5는 장식밴드 끝부분을 사선으로 절단하였다()

. ㉡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장식밴드가 중창 일부를 덮지만 높이가 중창보다 미세하게 낮아서 중창 윗부분이 약간 드러나고 겹창은 덮지 않아 전부 드러

난다()

. 반면, 선행디자인 1, 2는 장식밴드와 중창의 높이가 같아서 중창이 완전히 덮이지만 겹창은 전부 드러나고( , )

, 선행디자인 5는 중창의 일부가 드러나지만 중창과 구별되는 겹창이 따로 드러나지는 않는다()

다) ㉠와 관련해, 이 사건 등록디자인처럼 장식밴드 끝부분을 모서리가 완만하게 둥근 곡선으로 처리하는 것은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우선권주장일 전에 공지된 다음 표의 선행디자인 6, 7, 9, 12에 비추어 볼 때,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된다. ㉠와 관련해서도, 장식밴드 위쪽에 중창 일부가 드러난 형상은 선행디자인 5나 아래 선행디자인 12에 공지되어 있고, 겹창이 전부 드러나는 형상은 선행디자인 1, 2에 공지되어 있다. 통상의 디자이너가 이들 요소를 결합하는 데 특별한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지도 아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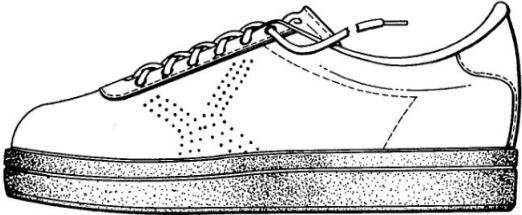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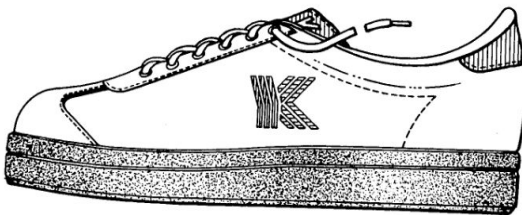
선행디자인 6(갑 제18호증)	선행디자인 7(갑 제19호증)
 <p data-bbox="162 954 783 1048">중국에서 2011. 2. 16. CN301467192S호로 공고된 운동화 및 레저화 디자인</p>	 <p data-bbox="823 954 1418 1048">미국에서 1983. 10. 4. Des. 270,778호로 등록된 테니스화 디자인</p>
선행디자인 9(갑 제21호증)	선행디자인 12(갑 제24호증)
 <p data-bbox="162 1350 783 1444">중국에서 2011. 3. 16. CN301479724S호로 공고된 신발 디자인</p>	 <p data-bbox="823 1350 1418 1444">미국에서 2008. 10. 7. D577,880S1호로 등록된 신발 디자인</p>

라) 피고는,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장식밴드 표면은 형태가 불규칙한 불룩한 작은 도형들이 배치됨에 있어, 도형 주위로 오목하게 팬 부분은 '/ 방향 사선'이 '\ 방향 사선'보다 훨씬 뚜렷하게 드러나는 무늬로 이루어져 있고, 이는 새로운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무늬는 등록디자인공보상의 도면을 상당히 확대하지 않으면 식별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핵심적 특징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어려워 특별히 수요자 주의를 끄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설령 피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장식밴드 표면 무늬에 어떤 특징이 있다고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선행디자인 5 등의 장식밴드 무늬와 다른 미감적 가치를 가진다고 볼 수 없는 상업적 변형에 불과하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해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미국 디자인 특허는, 그 도면상 장식밴드에 무늬를 전혀 포함시키지도 아니하였다.

2) 차이점 ②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2, 2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신발 중창을 가로지르는 줄무늬가 중창의 윗부분에 배치되어 있는 형태'는 앞에서 본 선행디자인 6, 7, 9, 12, 다음 표의 선행디자인 10, 11 등에도 드러나 있는바, 중창의 줄무늬를 위아래로 옮겨 배치하는 것은 신발 디자인 분야에서 공지된 형태 또는 흔한 창작수법이라고 인정된다. 그렇다면 차이점 ②는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그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

선행디자인 10(갑 제22호증)	선행디자인 11(갑 제23호증)
 <p data-bbox="177 1431 770 1525">미국에서 1978. 1. 24. Des. 247,007호로 등록된 운동화 디자인</p>	 <p data-bbox="831 1431 1409 1525">미국에서 1977. 8. 9. Des. 245,293호로 등록된 운동화 디자인</p>

3) 차이점 ③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차이점 ③은 통상의 디자이너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중의 어느 하나를 결합하여 쉽게 창작할 수 있다.

가) 선행디자인 1, 2, 3에는 다음과 같이 밴드형 고리가 발뒤꿈치에 걸리는 부분의 폭이 더 넓게 형성된 형태가 나타나 있다.

이 사건 등록디자인	선행디자인 1	선행디자인 2	선행디자인 3
			

나) 이 사건 등록디자인의 경우, 선행디자인들과 달리 밴드형 고리가 윗변 쪽으로 조금 더 넓게 개방되도록 구부러져 있다. 밴드형 고리가 회전할 때 그 경로가 이루는 원을 놓고 생각해 보면, 선행디자인들에서는 밴드형 고리의 발뒤꿈치 쪽 말단 전체가 그 원의 반지름과 수직으로 접선을 이루지만,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밴드형 고리의 폭 정가운데에 돌출된 줄무늬 부분을 접점이라고 볼 때 윗변 쪽이 접점을 지나는 반지름과 둔각을 이루게 된다(아랫변 쪽은 그 반지름과 예각을 이룰 것이고, 결과적으로 윗변 경로가 그리는 원이 아랫변 경로가 이루는 원보다 크게 된다). 이러한 변형은 발뒤꿈치 부분의 마찰을 경감하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적 차이는 전체적으로 볼 때 종전 디자인과 다른 미감적 가치가 인정되지 않거나 특별히 수요자 주의를 끌기 어려운 기능적 변형에 불과하다. 이 사건에서도 쌍방은 그 차이로 인한 미감상 차이에 관하여 주장한 바 없고, 이 사건 등록디자인과 관련하여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미국 디자인특허는 밴드형 고리 부분 전체를 청구범위에서 아예 제외하고 있다.

바. 소결론

이 사건 등록디자인은 선행디자인 4에 선행디자인 1, 2, 3, 5와 해당 디자인 분야의 공지형태를 결합함으로써 쉽게 창작할 수 있으므로,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되고, 같은 법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 사건 등록디자인이 구 디자인보호법 제5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심결을 취소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관계에 있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위반을 이유로 한 등록무효 주장에 관하여는 더 나아가 살피지 아니한다).

4. 결론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재판장 판사 문주형

 판사 권보원

 판사 한지윤

[별지 1]

이 사건 등록디자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임.
2. 문자 부분은 본 디자인에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님.
3. 균청색으로 표현한 부분은 부분디자인으로서 등록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아님.
4. [도면 1.1]은 디자인의 전체적인 형태를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5. [도면 1.2]는 디자인의 정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6. [도면 1.3]은 디자인의 배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7. [도면 1.4]는 디자인의 좌측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8. [도면 1.5]는 디자인의 우측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9. [도면 1.6]은 디자인의 평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10. [도면 1.7]은 디자인의 저면부분을 표현한 도면대용 사진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신발"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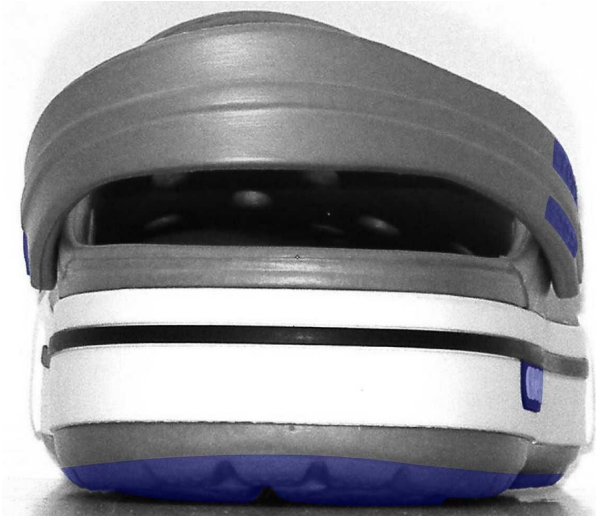
[도면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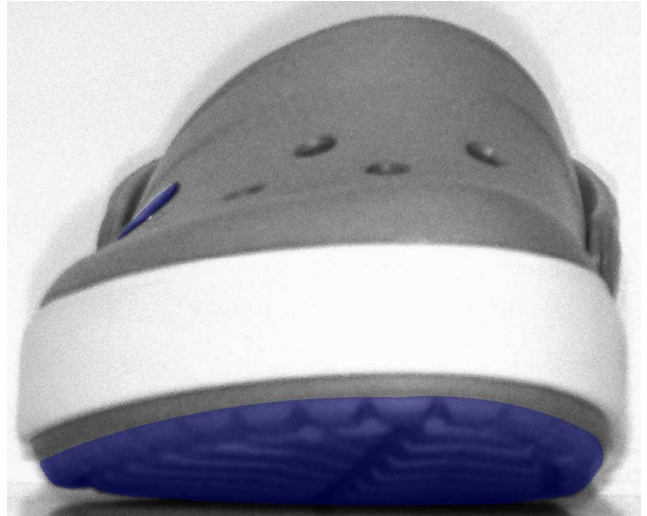
[도면 1.3]



[도면 1.4]



[도면 1.5]



[도면 1.6]



[도면 1.7]



[별지 1-1]

우선권 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 디자인(US D691,351 S)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footwear, as shown and described.

DESCRIPTION

FIG. 1 is a front perspective view.

FIG. 2 is an outer side view.

FIG. 3 is an inner side view.

FIG. 4 is a front view.

FIG. 5 is a back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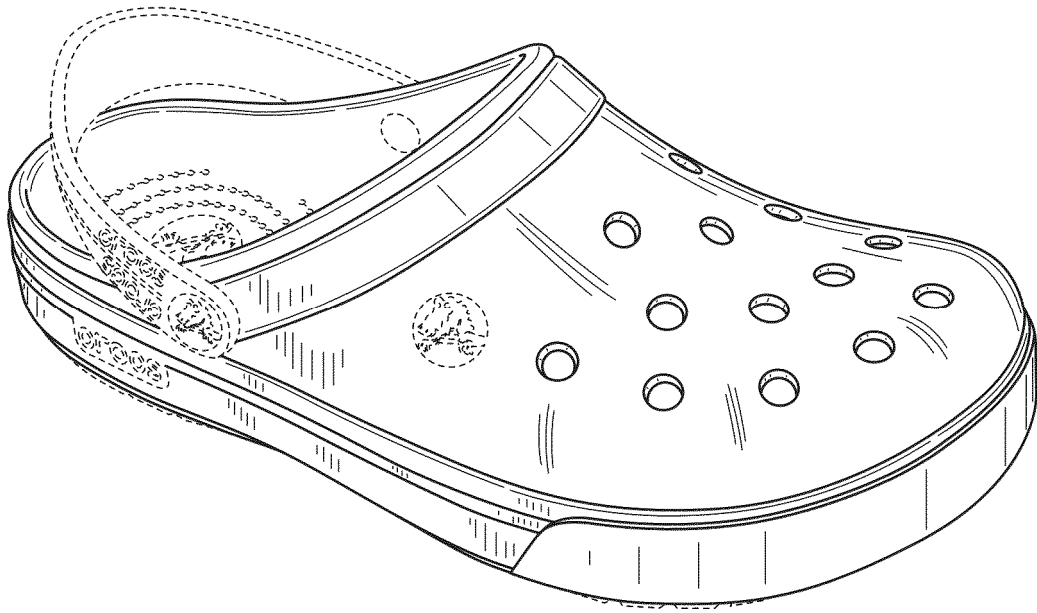
FIG. 6 is a top view; and,

FIG. 7 is a bottom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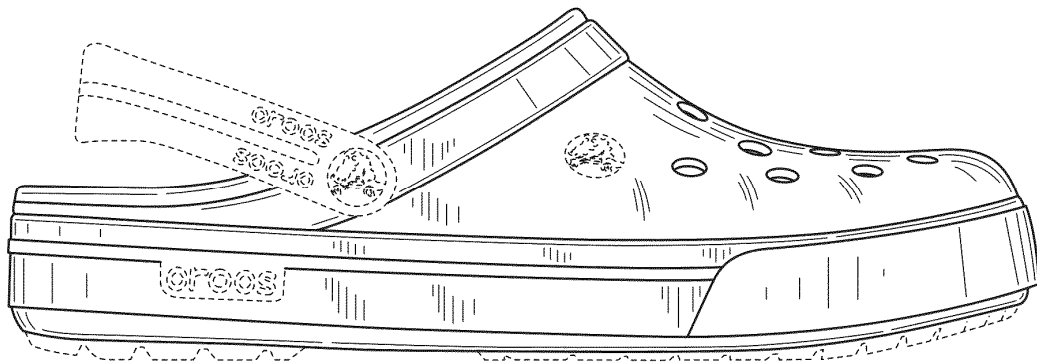
The broken lines in the drawings represent unclaimed environmental subject matter and form no part of the claim.

The C word mark and logo forming part of the disclosure is a registered trademark of C,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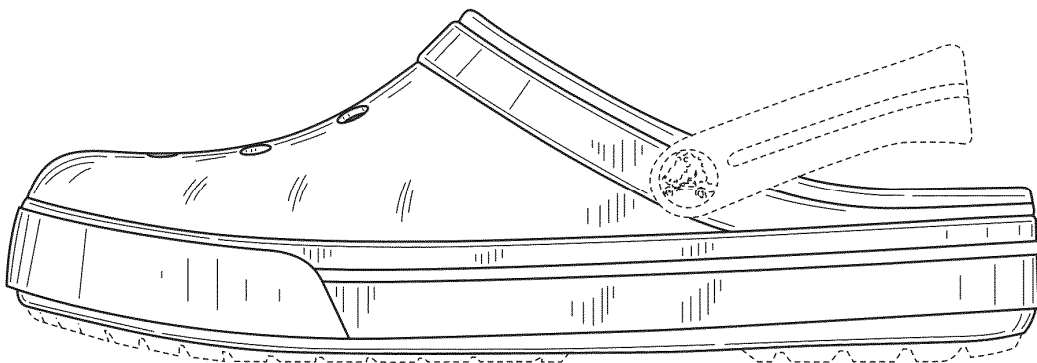
[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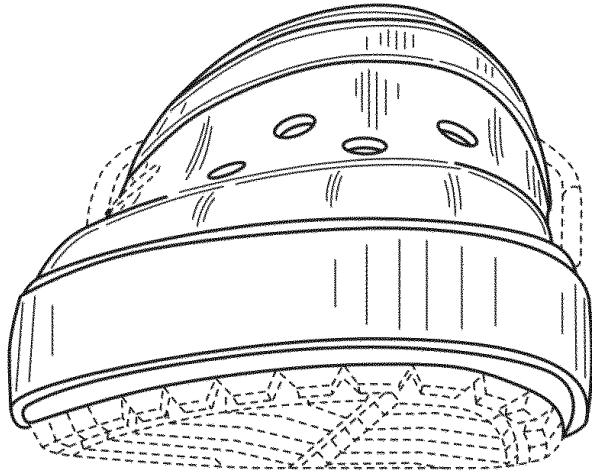
[FIG.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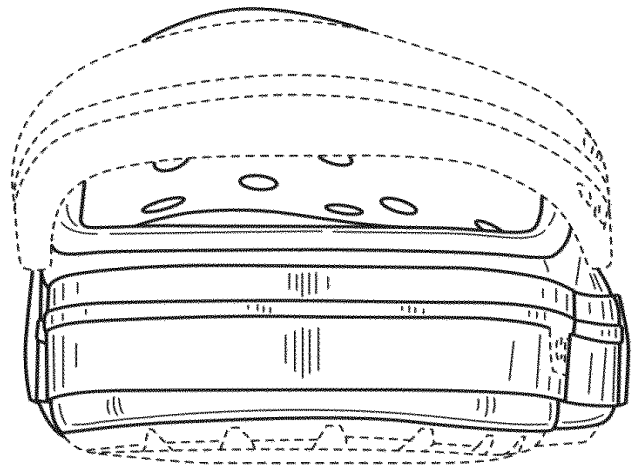
[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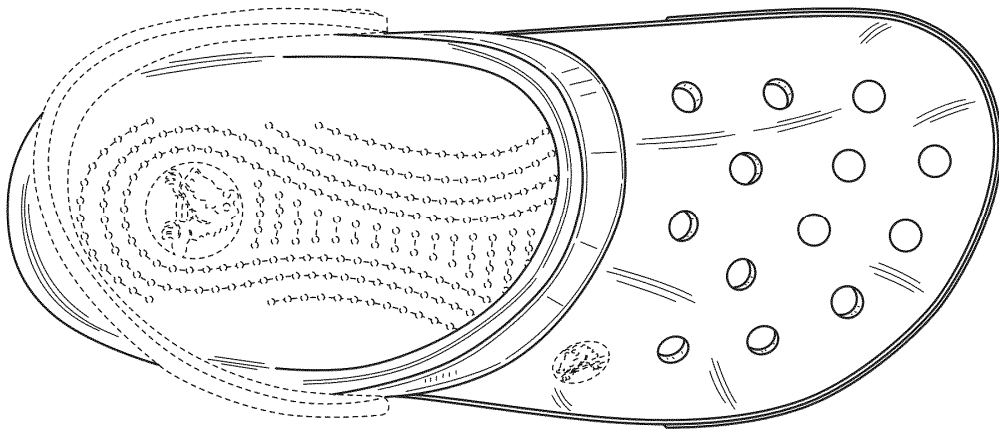
[FIG.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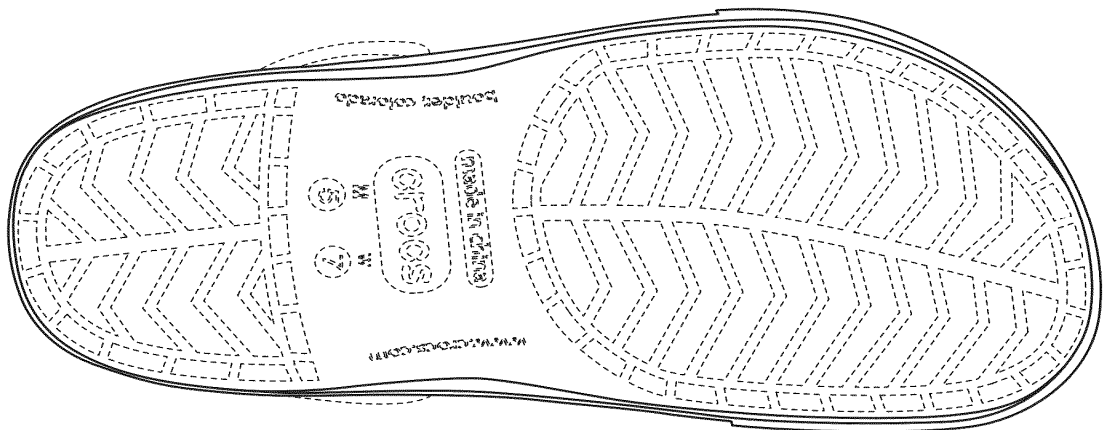
[FIG. 5]



[FIG. 6]



[FIG. 7]



[별지 2]

선행디자인들

가. 선행디자인 1(디자인등록 제574279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고무임.
2. 발등과 밑창의 연결부위 중 전면 부분에는 격자무늬가 형성된 단색의 장식편이 부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2개의 장식줄이 형성된 스트랩이 부착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슬리퍼"의 형상과 모양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대용 사시사진]



[도면대용 정면사진]



[도면대용 배면사진]



[도면대용 좌측면사진]



[도면대용 우측면사진]



[도면대용 평면사진]



[도면대용 저면사진]



[도면대용 참고사진]



나. 선행디자인 2(디자인등록 제574280호)

【디자인의 설명】

1. 재질은 합성수지 및 고무임.
2. 발등과 밑창의 연결부위 중에서 전면 부분에는 격자무늬가 형성된 백색의 장식편이 부착되고, 나머지 부분에는 흰 바탕에 2개의 장식줄이 형성된 스트랩이 부착됨.

【디자인 창작 내용의 요점】

"슬리퍼"의 형상과 모양 및 색채의 결합을 디자인창작 내용의 요점으로 함.

[도면대용 사시사진]



[도면대용 정면사진]



[도면대용 배면사진]



[도면대용 좌측면사진]



[도면대용 우측면사진]



[도면대용 평면사진]



[도면대용 저면사진]



[도면대용 참고사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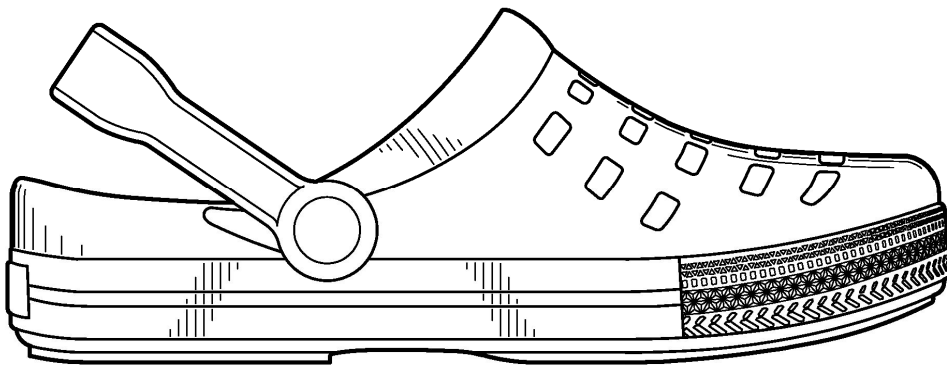


다. 선행디자인 3(US D645,235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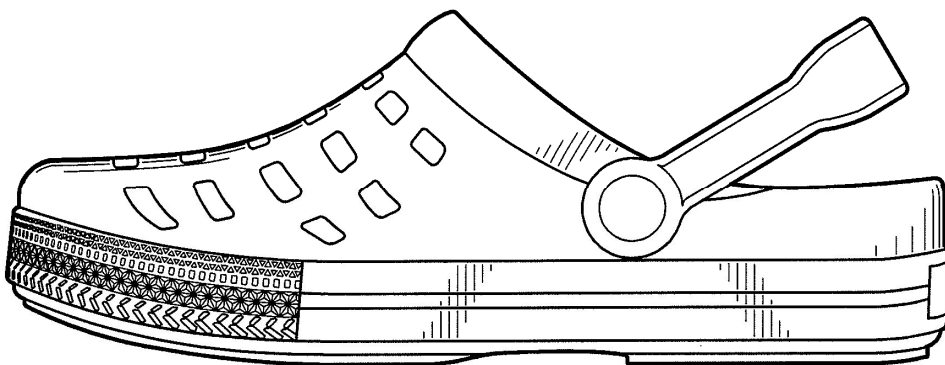
[FIG. 1 사시도(a right perspectiv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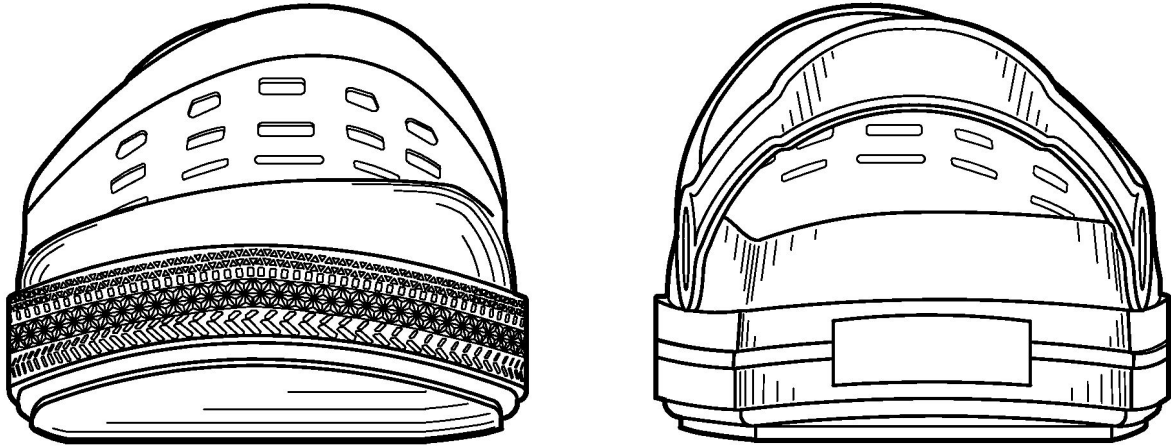
[FIG. 5 좌측면도(a left side elevationa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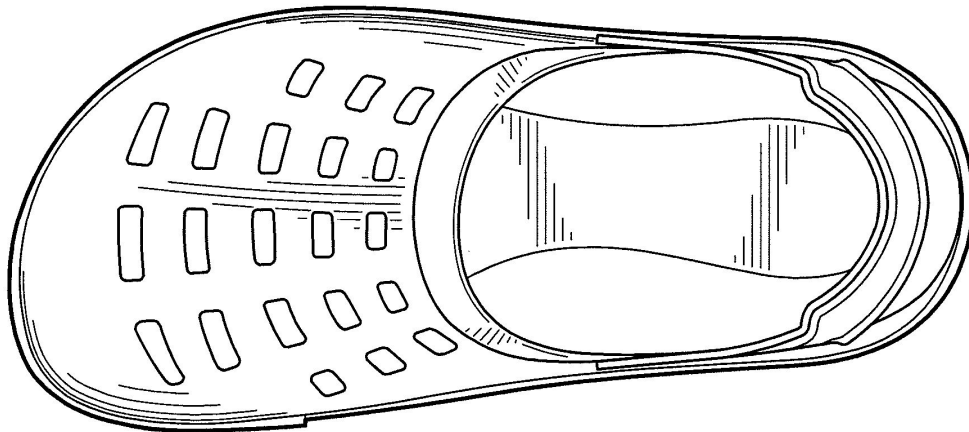
[FIG. 3 우측면도(a right side elevationa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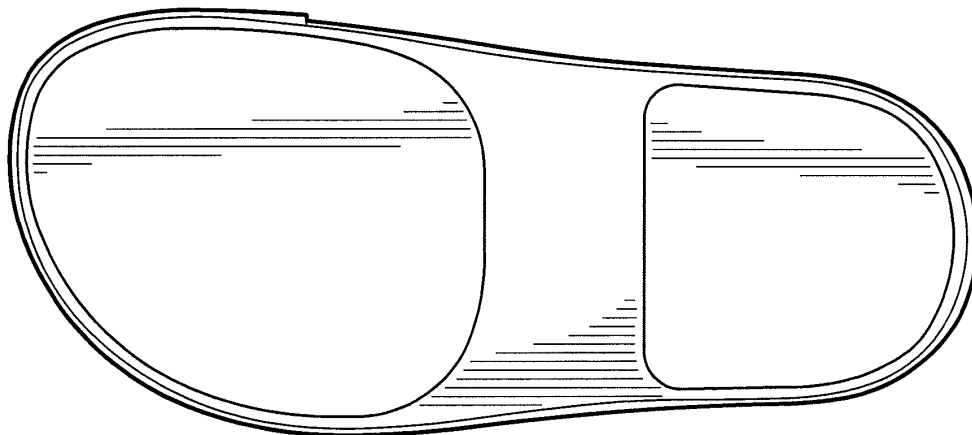
[FIG. 6 배면도(a rear elevational view)] [FIG. 7 정면도(a front elevational view)]⁷⁾



[FIG. 2 평면도(a top plan view)]



[FIG. 4 저면도(a bottom plan view)]



7) 선행디자인 3의 각 도면은 발뒤꿈치 쪽을 "정면"으로 본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라. 선행디자인 4(US D610,784 S)

CLAIM

The ornamental design for footwear, as shown and described.

DESCRIPTION

FIG. 1 is a front perspective view.

FIG. 2 is a front view.

FIG. 3 is a back view.

FIG. 4 is an inner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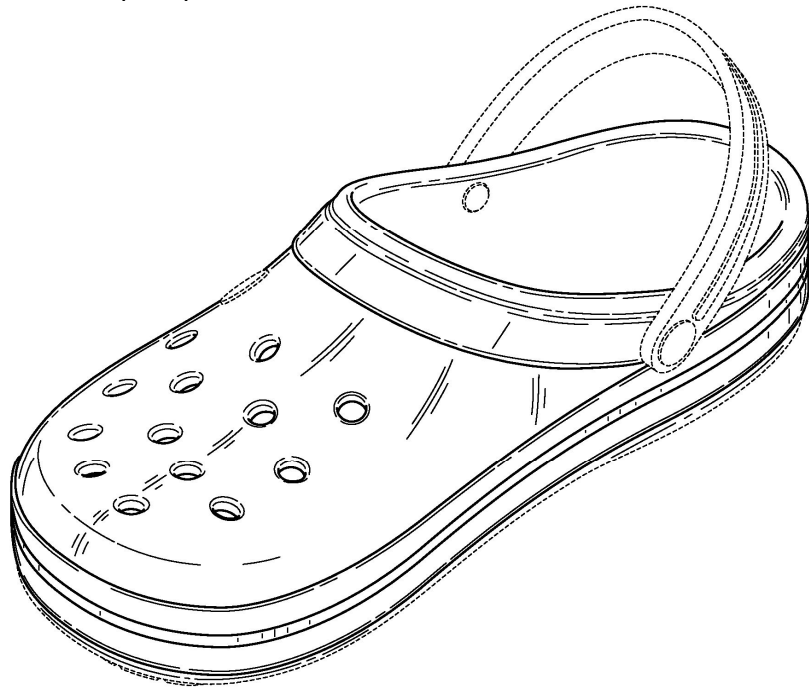
FIG. 5 is an outer side view.

FIG. 6 is a top view;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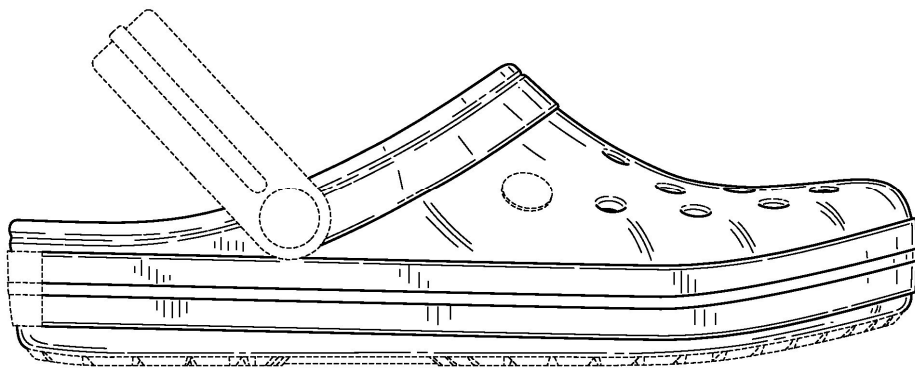
FIG. 7 is a bottom view.

The broken line showing of the sole, upper, and strap is for illustrative purpose only and forms no part of the claimed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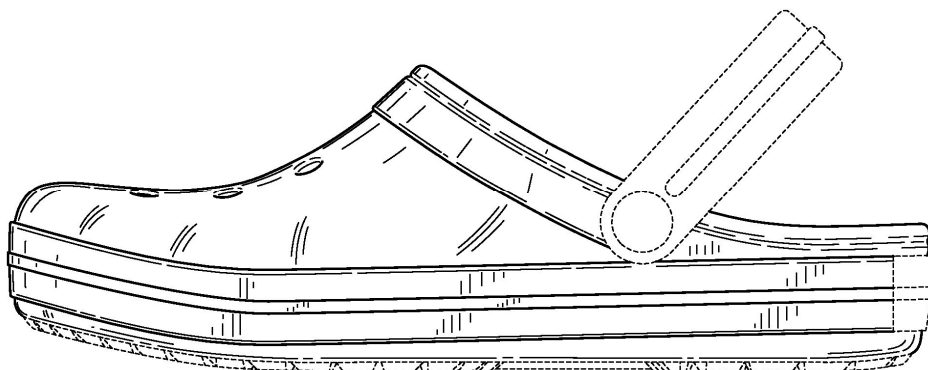
[FIG. 1 사시도(a front perspectiv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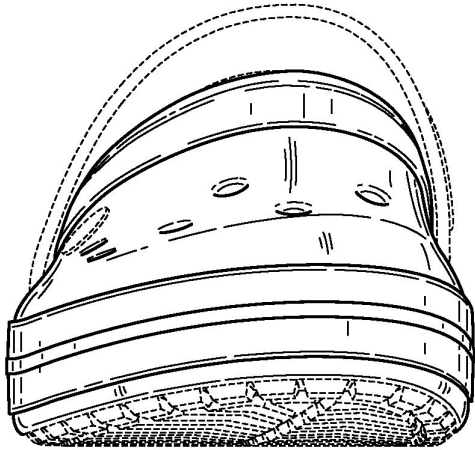
[FIG. 5 외면도(an outer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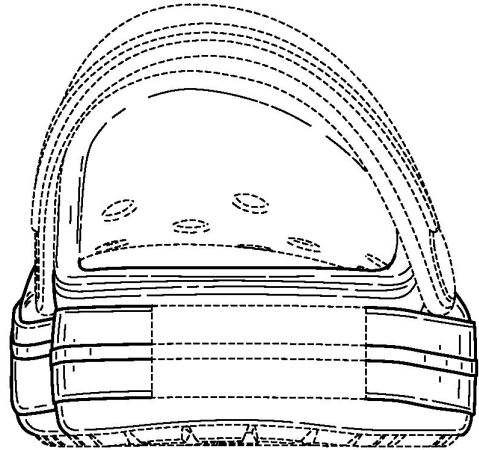
[FIG. 4 내면도(an inner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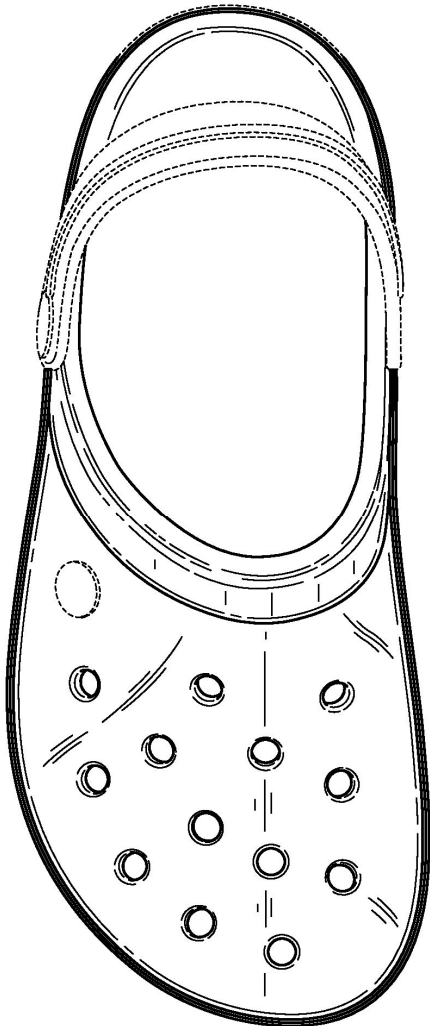
[FIG. 2 정면도(a fron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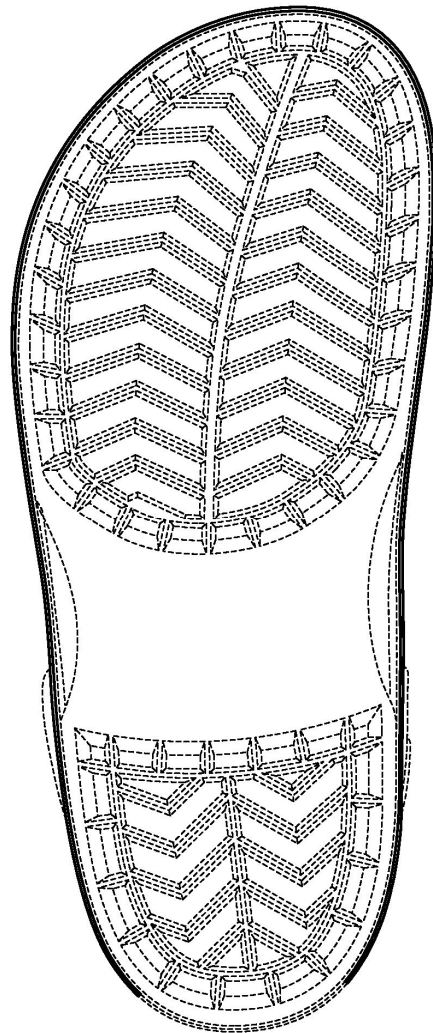
[FIG. 7 배면도(a back view)]



[FIG. 6 평면도(a to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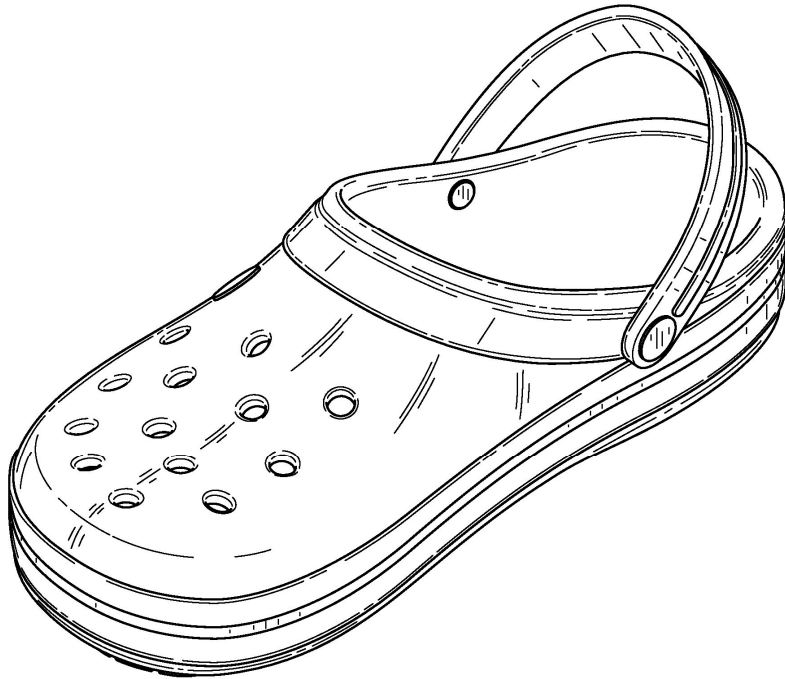


[FIG. 7 저면도(a bottom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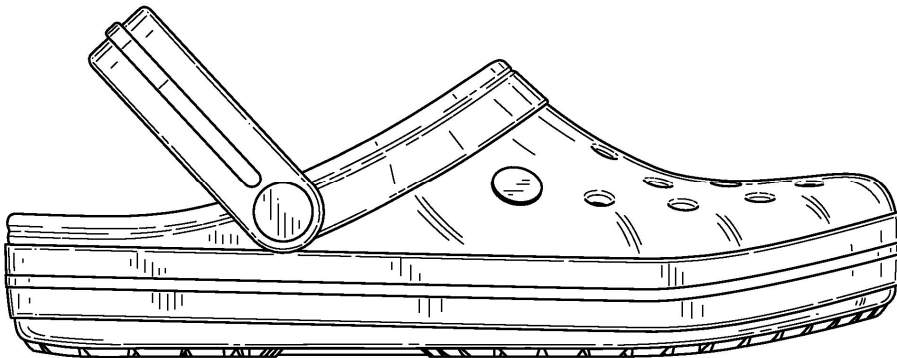


라-1. 선행디자인 4의 출원서(갑 제27호증) 첨부 도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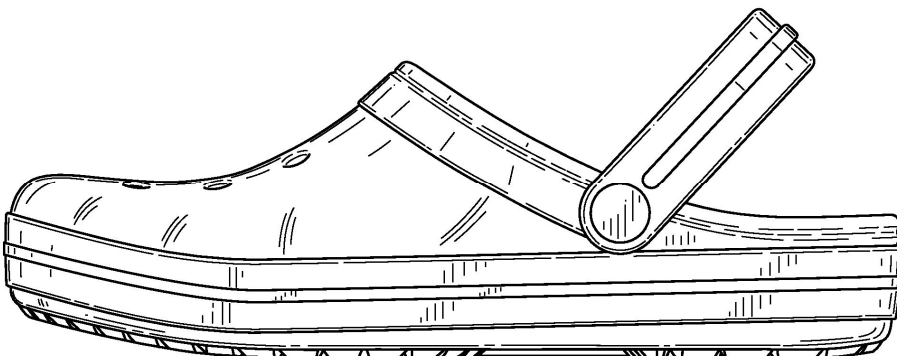
[EXHIBIT 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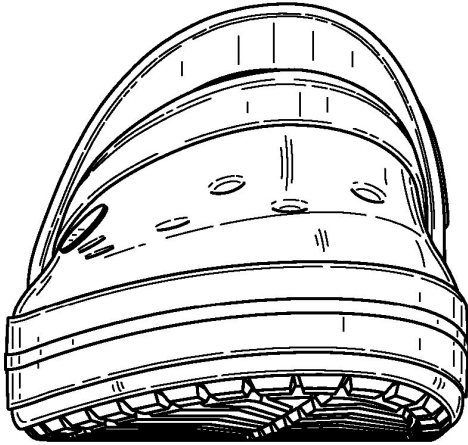
[EXHIBIT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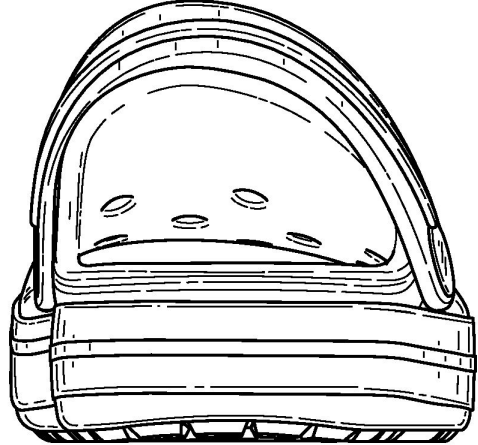
[EXHIBIT 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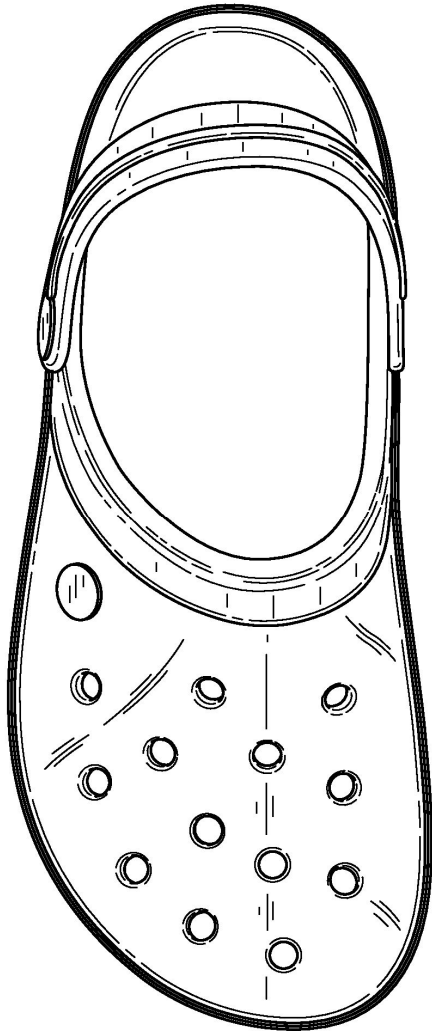
[EXHIBIT 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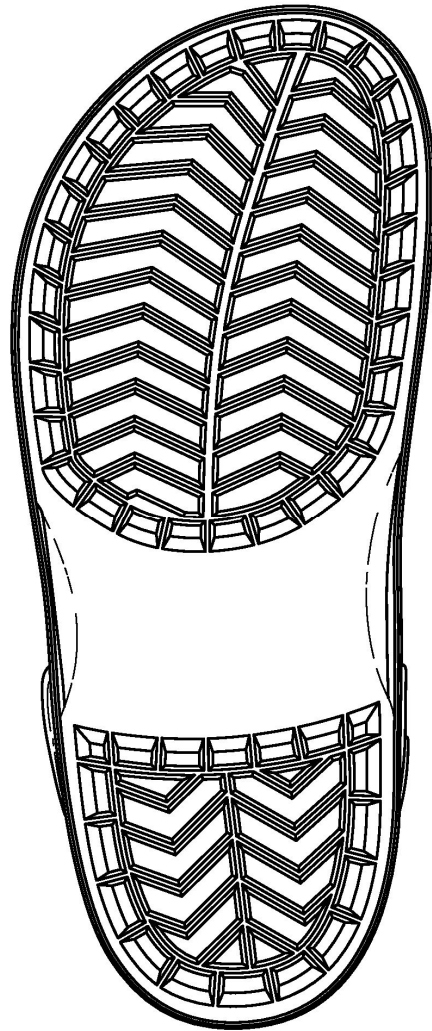
[EXHIBIT Q]



[EXHIBIT 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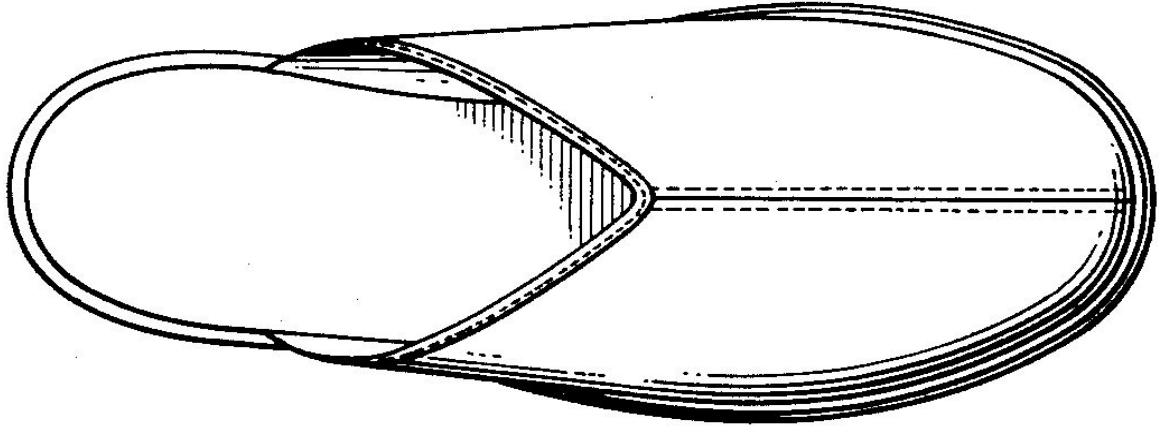


[EXHIBIT 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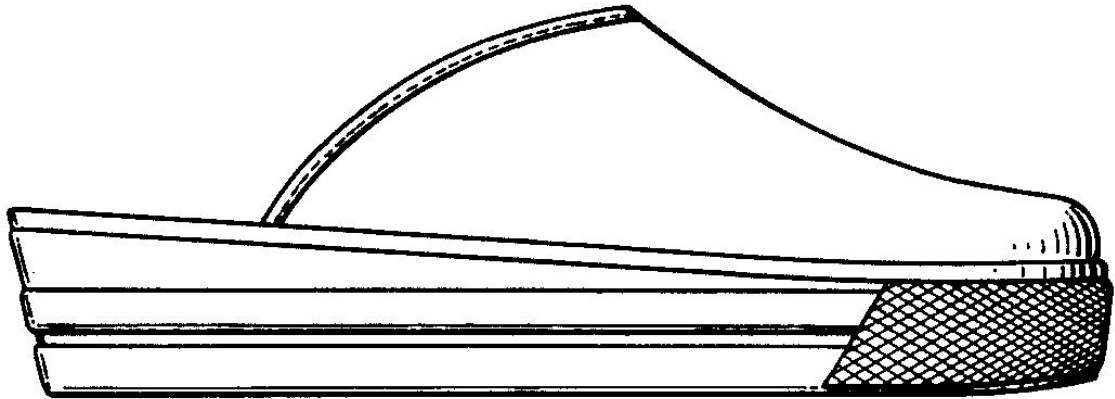


마. 선행디자인 5(US Des. 247,0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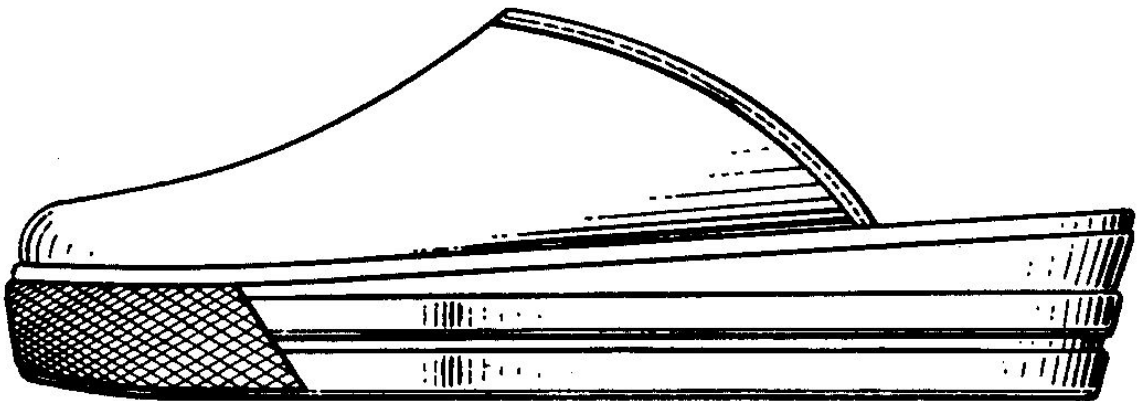
[FIG. 1 평면도(a top plan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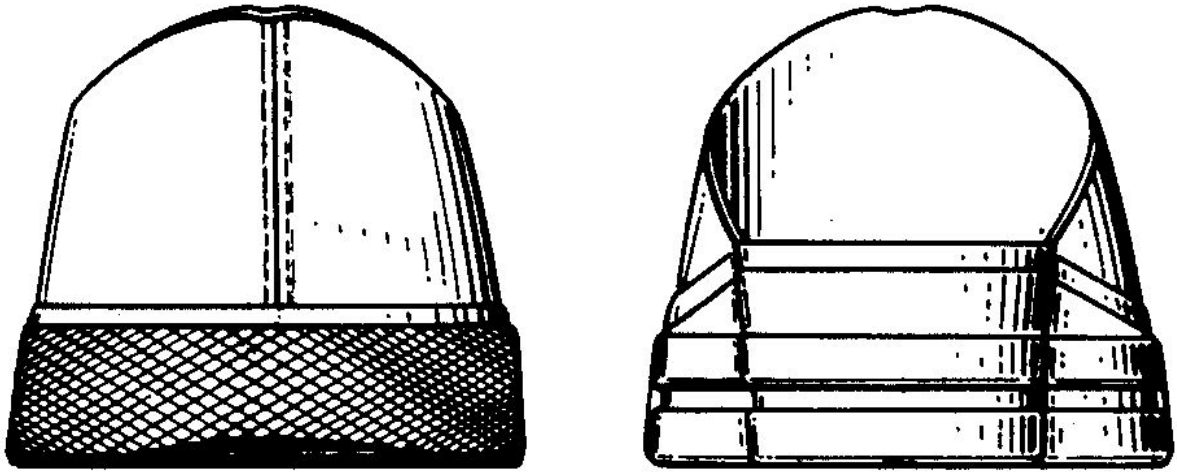
[FIG. 2 측면도(a side elevationa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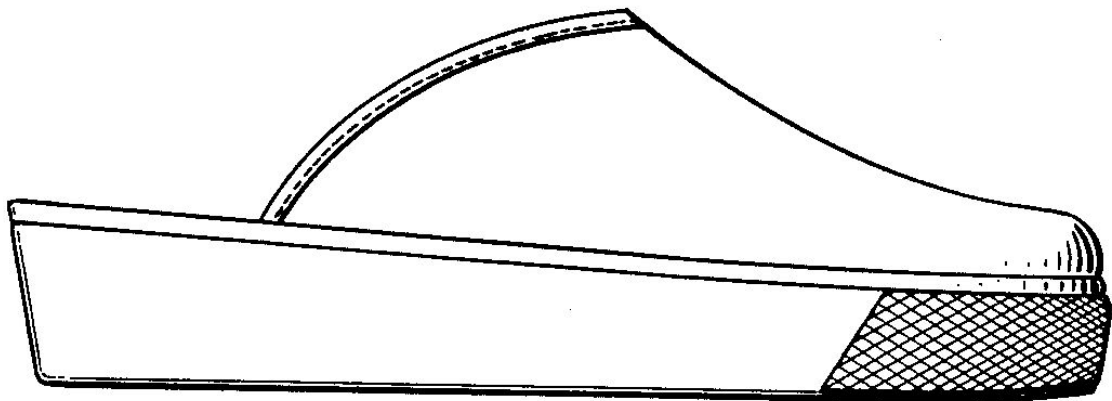
[FIG. 3 반대 측면도(an opposite side elevationa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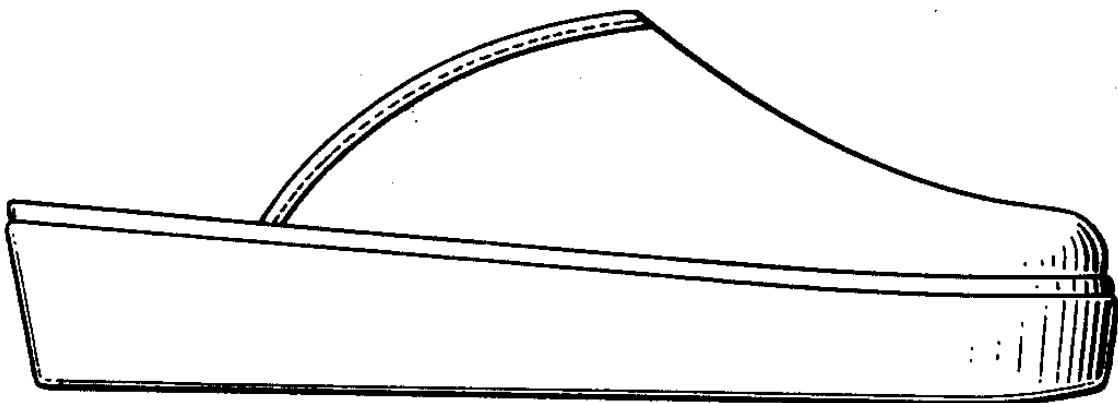
[FIG. 4 정면도(a front elevational view)] [FIG. 5 배면도(a rear elevationa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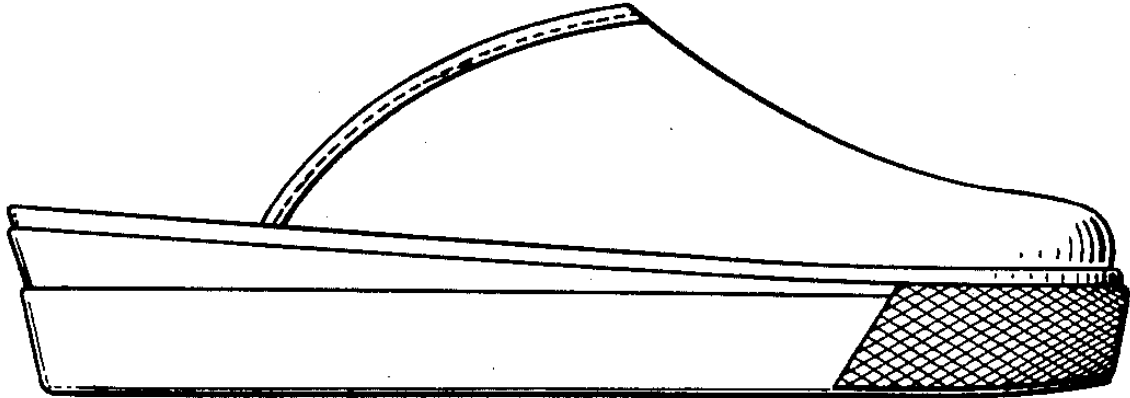
[FIG. 6 제2 실시례 측면도]



[FIG. 8 제3 실시례 측면도]



[FIG. 11 제4 실시례 측면도]



[FIG. 13 제5 실시례 측면도]

